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예정(8. 27. ~ 9. 9.)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을 거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 (생 략)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시관 · 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 ·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 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 록물을 연구 · 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 통령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에는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 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 다.
<u><신 설></u>	④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 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 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 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 · 관리하여 야 한다.

<신 설>

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을 거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	
연 락 처	(044) 211 - 2216